
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

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(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4조제4항 및 제64조제3항 관련)

1. 허가어업

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번호를 부여하며, 행정기관의 약칭, 어업의 종류,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.

(예시) 부산 대형트롤 제2020- 호, 강화 연안자망 제2020- 호

2. 신고어업

어업의 종류별로 신고번호를 부여하며, 행정기관의 약칭, 어업의 종류, 신고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.

(예시) 여수 나잠 제2020- 호

3. 어획물운반업

등록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, 어획물운반업의 명칭, 등록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.

(예시) 강화 어획물운반업 제2020- 호